

[첨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제정 2023.08.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삼구아이앤씨(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당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항상 당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자율준수프로그램'라 한다)은 제2호에 따른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 기준 및 실행방안 등의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율준수주관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는 부서를 말한다.
6. " " "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 소속직원으로 해당 부서의 자율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임직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로서 회사로부터의 구매, 계약,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위임 또는 관리·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 ①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후임자 혹은 해당 부서의 차상위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위반사항 조사
3.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4. 공정거래위원회 등 대외 기관과의 공식적인 대화채널로서의 역할
5. 기타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제6조(자율준수주관부서의 업무) 자율준수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3. 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의 자율준수관리자에 보고
4. 회사 각 부서의 자율준수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 등 지원활동
5. 공정거래 관련 교육 주관

제7조(업무의 독립성 등 보장)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집행의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보직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임직원의 의무)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시장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공정거래 의무를 인식하고, 모든 경영활동이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활동에 임해야 한다.

2. 회사와 임직원은 다른 사업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 조작하는 등 다른 사업자와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3.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래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기존 거래처 또는 새로운 거래를 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처간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4.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회사의 물품을 강제로 구입 하게 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아니한다.
 5.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공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특정사업자에게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6. 경쟁사업자로부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계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7. 거래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배타조건부거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으로 거래하거나 기술의 부당이용이나 거래처 이전 방해 등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8. 부당하게 자금·자산·인력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자율준수의지 선언)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실천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의 자율준수실천 의지 선언은 당사의 임직원이 접근 가능한 전자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0조(교육의 실시 및 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위험이 높은 직무 관련 부서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수시로 볼 수 있는 장소에 편람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 및 비치한다.
- 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2.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상 유의사항
 3. 기타 임직원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모니터링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관련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 항과 같다.

1. 구매 및 계약과 관련한 규정,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점검, 조사
2. 내부제보시스템에 의한 제보 등의 사항
3. 협력사를 포함한 외부인 혹은 임직원의 자문 및 요청
4. 대표이사 혹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시

제12조(내부제보시스템 운영)

- ① 회사의 임직원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지체 없이 회사의 내부제보시스템을 통해 제보하여야 한다.
- ② 내부제보자의 제보와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제보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3조(시정 요구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인사담당부서는 제재 조치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조치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하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관한 업무수행 시 발생한 모든 문서는 보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보존기간은 회사 문서규정의 예에 따른다.
- ③ 기타 문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사 문서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보칙)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